##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22-045호

## 시정권고 재결

2022년 12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사 건 명 : 예인선 삼표301호의 피예인부선 삼표302호·일반화물선 창성 충돌사건

피요청자 : 추\*\*\* (\*\* \*\*\* \*\*\* \*\*\* \*\*\*\* \*\*\*\*

## 시정권고서

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창성이 2021년 8월 28일 10시 50분경 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인근해상에서 삼표301호 예인선열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

이 충돌사고는 도선사가 도선하면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던 창성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법을 따르지 않은 무리한 앞지르기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 다.

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제 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, 도선사가 도선하는 경우 귀하가 선박 운항의 최종 책임자인 선장으로 서 도선사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